

문서번호	주민생활지원과-11939	★주무관	자원봉사팀장	주민생활지원과 장	주민생활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결재일자	2016.4.20.	신동하	문희선	심원택	강대형	하철승	04/20 박경수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					
보도여부		협 조	기획예산과장	조상연			
			법무팀장	이기호			
			주무관	송수연			
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-
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

2016.4.18.

강 북 구
(주민생활지원과)
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-

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」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함.

I 조례안 개요

- 조 례 명: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일자: 2016. 4. 15.
- 발 의 자: 구본승 의원
- 찬 성 자: 김영준 의원, 박문수 의원
- 제안이유
개인,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, 경험,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누어주는 재능나눔 활동에 대한 권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- 예산 조치: 불필요(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반영 예정)
- 검토결과: 일부개정조례(안) 수용

II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을 개정함(안 제명)
-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규정함(안 제6조)

-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,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)

Ⅲ 검토 의견

일부개정조례(안) 수용

- 개정조례안은 강북구민들이 자율적인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에 대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
-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구민들의 재능을 나눔어 줌으로써 구민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 강북구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

-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·시행: **1개 자치단체**

지역	조례명	제정일	비고
성남시	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	2013.11.13.	

붙임: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1부. 끝.